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494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65,313,254원 및 그 중 87,522,915원에 대하여는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85%의, 8,686,101원에 대하여는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0. 접수 제51405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15. 8. 20. 피고 B에게 이자율 ‘3개월 CD금리 + 7.5%’,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 10%’, 상환기일 ‘대출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9,99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위 대출금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나. 피고 B는 1995. 11.경 주식회사 F에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4. 10. 29.경 카드론 약정을 하고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 B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8,477,755원 및 카드론 약정에 따른 대출금 208,346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다. 2020. 7. 27.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대출금 및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총 합계액은 165,313,254원(= 원금 96,209,016원 + 이자 69,104,238원)이고, 그 중 주식회사 D에 대한 2019. 11. 1. 이후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11.85%이고, 주식회사 F에 대한 2019. 11. 1. 이후의 약정지연이자율은 연 23.7%이다.

금융기관	명목	원금	이자 및 지연이자
D	일반자금대출	87,522,915	60,127,896
F	카드론대출	208,346	244,321
	신용카드사용대금	8,477,755	8,732,021
	합 계	96,209,016	69,104,238

라. 피고 B는 2010. 7. 6.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6. 1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던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급여 및 결혼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재산으로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조미옥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내지 5층 각 136.40㎡, 옥탑 16.3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2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3.0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57분의 28.2745 ㎡.

